

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9-29
--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9. 03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른 제명 및 용어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법률 개정에 따른 변경된 사항 반영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로
제명변경
- 옥외광고정비기금 → 옥외광고발전기금
- 옥외광고업자 → 옥외광고사업자

나. 기금의 용도 중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

(안 제3조제1항제6호 신설)

다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 및 문장 정비

- 관하여 필요 → 필요 (안 제1조)
- 현금구좌 → 현금계좌 (안 제4조)
- 자 → 사람, 자로서 → 사람으로서 (안 제5조)

- 위원에 대하여 → 위원에게 (안 제8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규제여부 : 해당사항 없음

마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 : 2019. 2. 21. ~ 3. 13. (제출의견 없음)

2) 자치법규 부폐영향 평가 : 원안동의

3) 자치법규 성별영향 평가 : 개선사항 없음

4)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19. 03. 19.)

5)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

6)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

7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**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
조례안**

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 제6조의2”를 “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2”로, “옥외광고정비기금(이하“기금”이라 한다)”을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발전기금”으로, “관하여 필요”를 “필요”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기금”을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발전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 제6조제4항”을 “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6조제4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
3.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
4.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

제3조제1항제3호 중 “옥외광고업자”를 “옥외광고사업자”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
제4조제1항 중 “현금구좌”를 “현금계좌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옥외광고정비기금”을 “옥외광고발전기금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자”를 “사람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자로서”를 “사람으로서”로, “자”를 “사람”으로 한다.

제8조제3항 중 “위원에 대하여”를 “위원에게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서울특별시 마포구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<u>옥외광고물 등 관리법</u>」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<u>옥외광고정비기금</u>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하고,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기금의 재원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<u>옥외광고물 등 관리법</u>」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"구"라 한다)로 배분되는 수익금 「<u>옥외광고물 등 관리법</u>」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서울특별시 마포구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「<u>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</u>」 제6조의2----- ----- 서울특별시 마포구 <u>옥외광고발전기금</u>----- 필요-----.</p> <p>제2조(기금의 재원)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발전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<u>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</u>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제6조제4항-----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

<p>3. 「<u>옥외광고물 등 관리법</u>」 제 20조에 따른 과태료</p>	<p>3.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</p>
<p>4. 「<u>옥외광고물 등 관리법</u>」 제 2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</p>	<p>4.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 제금</p>
<p>5. ~ 7. (생 략)</p>	<p>5. ~ 7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조(기금의 용도)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.</p>	<p>제3조(기금의 용도) ① ----- ----- -----.</p>
<p>1. · 2. (생 략)</p>	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p>
<p>3. <u>옥외광고업자</u>에 대한 교육 및 지원</p>	<p>3. <u>옥외광고사업자</u>----- -----</p>
<p>4. · 5. (생 략)</p>	<p>4. · 5. (현행과 같음)</p>
<p><신 설></p>	<p>6.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 한 사항</p>
<p>6. (생 략)</p>	<p>7. (현행 제6호와 같음)</p>
<p>② (생 략)</p>	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조(기금의 운영관리)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·세출예산외 <u>현금구좌</u>로 관리한다.</p>	<p>제4조(기금의 운영관리) ① ----- ----- ----- <u>현금계좌</u>----- -.</p>
<p>② · ③ (생 략)</p>	<p>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<u>옥외광고정비기금</u> 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</p>	<p>제5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----- ----- -- <u>옥외광고발전기금</u> ----- -----</p>

<p>다)를 둔다.</p> <p>② · ③ (생 략)</p> <p>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<u>자</u>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p> <p>1. · 2. (생 략)</p> <p>3.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<u>자로서</u>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 · 관리 · 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<u>자</u></p> <p>⑤ (생 략)</p> <p>제8조(간사 및 수당) ① · ② (생 략)</p> <p>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<u>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</u></p>	<p>-----.</p> <p>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</p> <p>- <u>사람</u> 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</p> <p>-- <u>사람으로서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사람</u>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8조(간사 및 수당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</p> <p>----- <u>위원에게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
--	---

[별지 제2호서식]

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
- 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
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도시환경국 도시경관과 정우열
연락처	02-3153-9453

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4조의 제목 “(기금의 운영관리)”를 “(기금의 운용 및 관리)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,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로부터 기산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개정안	수정안
제4조(<u>기금의 운영관리</u>)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·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.	제4조(<u>기금의 운용 및 관리</u>) ① - ----- ----- ---.